

사업방법서 별지

(완성공사물공제)

1. 공제의 종류 : 기술공제 / 기타
2. 공제종목의 명칭 : 완성공사물공제
(Completed Construction All Risks Policy)
3. 공제의 목적
 - 가. 동산 및 부동산(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)
 - 나. 건설공사의 목적물, 재료, 장비 및 이와 관련되는 피공제이익
 - 다. 법률상의 배상책임
 - 라. 상실이익 및 이와 관련되는 각종 피공제이익
4. 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에 관한 사항
 - 가. 공제기간 :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이하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
 - 나. 공제료 납입주기 : 일시납, 2회납, 4회납
5. 공제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없음
6. 기타
공제료의 반환 : 관계법규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